

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창원시의회 의장 손 태 화



2025년 12월 29일

창원시의회 규칙 제53호

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본문 중 “그 개의 시부터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”를 “12명 이내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발언취지의”를 “발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발언 신청서와 발언 원고를 본회의 개의 5일 전 오후 6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추첨 이후에는 발언 원고의 주제를 변경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0조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<u>그 개의 시</u> 부터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<u>에서</u>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 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 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시정질문 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 시하지 않는다.	제40조(5분 자유발언) ① ----- ----- <u>12명 이내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<u>발언취지의 내용을 의회운영위원 회 회기 일정 확정 후 익일 09:00 부터 의장에게 먼저 신청하고 발 언 원고는 본회의 개의 전일(토요 일·공휴일은 제외한다) 18:00까 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	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<u>발언 신청서와 발언 원고를 본회 의 개의 5일 전 오후 6시까지 의장 에게 제출해야 하며, 추첨 이후에 는 발언 원고의 주제를 변경할 수 없다.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의장은 <u>발언취지</u> 의 원고를 접 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	④ ----- <u>발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⑤ 5분 자유발언은 한 회기 중 1인 1회에 한정한다. 다만, 의장은 제1항에 따른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⑤ -----
-----, <단서 삭제>

⑥ (현행과 같음)

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

◆ 개정이유

5분 자유발언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,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.

◆ 주요내용

- 가. 발언 의원 수를 12명으로 확대하고자 함. (안 제40조제1항)
- 나. 발언 신청 시 발언 취지가 아닌 발언 원고를 제출하고, 추첨 이후 원고의 주제 변경은 불가함. (안 제40조제2항)
- 다. 발언 횟수를 한 회기 중 1인 1회로 한정하고,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추가 허가 관련 단서를 삭제함. (안 제40조제5항)